

울산지방법원 2019. 5. 28 선고 2018가단25617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주식회사 B

변 론 종결 2019. 5. 14

판 결 선고 2019. 5. 28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6. 7. 25.접수 제575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인정하는 사실

- 1) 원고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.
 - 2) 원고가 2006년경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.
 - 3) 원고가 2006. 7. 25. 피고에게 대리점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같은 날 접수 제57556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마쳐 주었다(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).
 - 4) 이 사건 제소일을 기준으로 해서 원고가 이미 10여 년 전에 피고와의 대리점 거래를 끝냈고,원고의 피고와의 대리점 거래로 인한 채무가 발생한 지도 이미 10여 년이 경과하였다.
- [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,갑 제1,2호증(가지번호 포함),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판단

- 1)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,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상사채권 이고 소멸시효가 원고와 피고의 대리점 거래가 끝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타당하다.
- 2) 위와 같은 소멸시효의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.
- 3) 피고는 원고에게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판결 한다.

판사 김명한

별지